

Ⓢ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/ 대리 고영옥(6573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335호

시행일자 2017. 5. 30.

수 신 각 시도지사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91호(2017. 5. 30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68호, 2017.4.12.)」 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 내용]

- 얼음검사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
- 인유두종 바이러스검사 문구 명확화 등 급여기준 일체정비에 따른 개정
- 시행일자 : 2017. 6. 1

붙임: 개정고시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